

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김 용 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
서울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「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」으로 변경하고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·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기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역사바로세우기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